

뉴저지 한인 교협 이사회 정관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명칭): 본회는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이사회라 칭한다

제 2 조(목적):

- 1)뉴저지 한인교협의 발전을 돕고 협력한다
- 2)임원회에 필요한 평신도를 위한 사역을 제안하고 재정 후원한다
- 3)임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
- 4)교협 회관 건축을 위해 후원한다

제 2 장 회원

제 3 조(자격)

- 1)이사장과 교협 임원회가 추천한 분으로 20 명 내로 구성한다
- 2)임기는 1 년이고 연임 가능하다
- 3)이사장과 총무가 새 이사를 심사하여 추천하고 이사회 과반수로 결정한다
- 4)이사회에서 2/3 의 결정으로 이사직을 정지할 수 있다

제 4 조(의무와 권리)

- 1)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
- 2)회비를 납부한 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

제 3 장 임원

제 5 조(임원조직)

- 1)본회는 이사장 1, 총무 1 명을 둔다
- 2)이사장은 교협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과반수로 결정한다

제 6 조 (임무)

- 1)이사장 – 본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. 교협 임원회에 참여하여 소통한다
- 2)총무 – 이사장을 도와 회원에게 연락하며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
- 3)회계 – 교협 회계가 대신한다
- 4)감사 – 교협 감사로 대신한다

제 7 조(부서) 필요에 따라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부서를 둘 수 있다

제 4 장 회의

제 8 조(이사회와 총회)

- 1)정기 이사회는 2 회로 이사 조직이 끝난 직후와 회기 마지막 달인 9 월 중에 모이며 마지막 모임을 총회로 모인다
- 2)임시 이사회는 임원회의 요청이나 회원 1/3 의 요청으로 모일 수 있다
- 3)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업과 계획을 의논한다
- 4)총회는 결산을 승인한다
- 5)총회 재석인원 과반수로 정관개정을 할 수 있다

제 9 조(임원회) 이사장이 소집하여 모인다

제 10 조 모든 회의는 10 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되는대로 개최한다

제 11 조(총회 의결사항)

- 1)정관개정
- 2)임원결정
- 3)행사계획
- 4)결산 보고 및 승인

5 장 재정

제 12 조

- 1)회비는 연 \$500 로 하고 기타 필요시 이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한다
- 2)특별 행사로 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.
- 3)재정관리는 교협 회계가 돕는다

6 장 부칙

- 1)본회의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만국통상법에 의한다
- 2)본회 정관은 결의 즉시 시행한다

2022 년 5 월 1 일 이사회에서 첫 정관 결정